



##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규정

제 정 일	2020. 5. 1
개 정 일	2022. 8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센터의 역할) 센터는 창의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융·복합 교육공간을 활용한 창의 융복합 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융복합 분야의 교육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
2. 창의메이커스페이스 운영
3. 융복합 트랙 및 융·복합 학과 교육 지원
4. 4차 산업혁명(AI, 빅데이터, 드론 등) 기반의 융복합 비교과 개발·운영 및 평가 (개정 2022. 8. 1)
5.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연구, 개발 및 교육지원 (개정 2022. 8. 1)
6. 융복합 교육 공간을 활용한 교육 및 지원
7. 산업체 및 미래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복합 관련 교육지원
8. 기타 창의 융복합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
제 4조 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과 책임교수,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융복합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융복합교육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
6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6조 (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